

# 교육혁신원 규정

- 제정 : 2020. 3. 13.
- 개정 : 2020. 11. 9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교육혁신원은 대학 핵심역량 및 전공역량에 따른 역량기반 전공, 교양,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역량강화,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의 비전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수립 및 개선
2.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
3. 대학의 핵심역량에 기반 한 대학교육 질 관리 체계 수립 및 개선
4. 역량기반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
5.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
6.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성과 관리
7.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
8. 기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혁신관련 사업

## 제 2 장 조 직

**제3조(원장)** ① 교육혁신원장(이하 “원장”)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며,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교육혁신원에는 역량교육센터, 교수학습센터를 둔다.

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센터의 업무 수행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센터 단위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④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위원회)** ① 교육혁신원에는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육과정위원회와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설치)** 교육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혁신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역량기반교육지원센터,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혁신원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혁신원 제반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
3. 교육혁신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4.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 및 질 관리 적절성 여부
5. 교수-학습 프로그램 운영성과 및 질 관리 적절성 여부
6. 그 외 교육혁신원의 제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
**제9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0조(재정)**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충당한다.

**제11조(예산 및 결산)** 본 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해산) 본 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